

주요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

- ISO/IEC, ISO/IEC JTCL, CEN/CENELEC, IEEE등을 중심으로 -



이 선 화 / ETRI 정보통신표준연구센터 연구원,
TTA 지적재산권실무작업반 의장

지난 1994년 6월부터 1995년 2월까지
'주요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이란
제목으로 정보통신분야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문제에 대한 주요내용과
각 기구의 관련 자침들을 시리즈로 게재한 바
있습니다. 본 호에서는 관계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간 시리즈에서 다루지 않았고
국내에는 거의 소개되지 않았던 표준화
기구들의 지적재산권 정책과 이의 문제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합니다.

I. 머리말

오늘날 정보통신분야는 급격한 기술변화와 더
불어 규제완화(deregulation), 민영화(privatization),
자유화(liberalization), 지역화(regionalization)
및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환경의 변화,
그리고 망 외부효과성, 고도성장과 고부가가치
성, 기술개발 투자의 필요성과 같은 내재적 성격
으로 인하여 정책과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더욱 절감케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정보통신표준화 장(場)에
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논쟁이다.¹⁾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제도는 그 방법은 다르지
만, 기술과 관련되어 사회의 편익을 증가시킨다
는 점에서 각각 유용한 제도로 인정되며 양립되
고 있다. 그러나 양자는 개념과 특성상 갈등관계
에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 및 시장경쟁이 매우
치열한 국제관계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
되고 있으며 주요 표준화기구들도 이에 대한 기
본 정책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I. 머리말

III. 지역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

II. 국제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

IV. 맺음말

특히 정보통신표준화 대상의 다양성과 표준의 적실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국제 표준화 장에서 강화되면서 어떻게 하면 양자를 보다 효율적이며 조화스럽게 추진시켜 빠른 시일내에 필요한 표준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점이 관심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로 표준화기구들의 지적재산권 정책들을 분석해 보다 효율적으로 국내의 실정에 맞는 지적재산권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동안 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표준화기구들은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이하 'ITU'라 함),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이하 'ETSI'라 함),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이하 'ANSI'라 함), T1(Committee T1-Telecommunications), TTC(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mmittee, 이하 'TTC'라 함), RCR(Research & Development Center for Radio System, 이하 'RCR'이라 함) 등이었다.

본 고에서는 표준화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나 자료수집 등의 문제로 그간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하 'ISO'라 함)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이하 'IEC'라 함), ISO/IEC JTC 1(Joint Technical Committee-1, 이하 'JTC1'이라 함),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이하 'IEEE'라 함), CEN(Comite European de Normalisation, 이하 'CEN'라 함)/CENELEC(Comite European de Normalisation ELECrtechnique, 이하 'CENELEC'이라 함), ECMA(European Computer Manufacturers Association, 이하 'ECMA'라 함), JISC(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Committee, 이하 'JISC'라 함), TSACC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Advisory Council of

Canada, 이하 'TSACC'라 함)의 지적재산권 정책을 다루며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표준화활동 관계자들과 국내 지적재산권 정책운용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

II. 국제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정책

1. ISO/IEC

(1) ISO/IEC의 개요

ISO, IEC 양 기관 모두 스위스 민법에 기초한 사단법인이며, 비정부기관이다. 국제연합의 자문 기관의 지위에 있으며,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등 많은 국제기관과 연계하고 있다. 특히 GATT standard code에 있어서는, 각국이 ISO규격, IEC 규격을 기본으로 해야만 하고, 또한 신 GATT standard code(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정:WTO/TBT 협정)에서는, 규격제정 상황의 통보우선기관으로서 ISO/IEC 정보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ISO는 1947년에 국제연합규격조정위원회에 의해 설립되어, 회원수는 92, 기술전문위원회(TC) 182, 분과회(SC) 630, 그리고, 1,918명의 작업 그룹(WG)이 활동하고 있으며, 8420종의 국제규격이 제정되고 있다. IEC는 1906년에 정부대표자회의에 의해 설립되어, 회원수는 49, 기술전문위원회(TC) 87, 분과회(SC) 112, 작업 그룹(WG) 680이 활동하고 있으며, 2880종의 국제규격이 제정되어 있다.

(2) ISO/IEC의 지적재산권 정책

ISO/IEC는 ISO/IEC 전문업무용지침

(Directives)이라는 공통규약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 1부 전문업무용지침(Part 1 : Procedures for the technical work)
- 제 2부 국제규격제정 방법론(Part 2 : Methodology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 제 3부 국제규격의 기초 및 양식(Part 3 : Drafting and present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이들 지침은 1989년에 제 1판이 발행되었으며, 그 후 1992년에 개정 제 2판이 발행되었다.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개정 제안이 있어, 곧 제 3판이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침의 제 2부 국제규격제정의 방법론, 부록 A 특허항목의 인용(Annex A : Reference to patented items)에 지적재산권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그간 이에 대해 논의된 경과를 살펴보면, ISO/IEC가 서로의 공통지침을 작성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검토하여 1970년에 처음으로 “Note for the guidance of ISO and IEC Technical Committees on reference to patented items in their publications” (Approved by Council in Washington, 1970)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1989년 IEC/TC60/SC60A에 DAT (Digital Audio Tape) 규격이 제안되었을 당시 이에 관련된 특허에 관한 논쟁이 있었는데 1989년 3월 TC60에서, ‘특허의 취급에 관한 1970년 이래의 결정이 아직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IEC이사회에 제출되어 투표에 붙여졌다. 투표결과, 다수의 찬성으로 이 안이 받아들여지게 되어, 1989년 IEC 브라이튼 총회에서 WG의 설치가 결정되었으며 영국, 미국,

일본, 올란다가 멤버가 등록되었다.

1989년 12월 제 1회의 WG회의가 개최되어, 올란다 멤버가 개정안을 작성했지만, 많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1990년의 IEC 북경총회에서 WG멤버를 확대할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

1991년에는 재개정안이 작성되어, 각국 의견을 얻기 위해 회부되었으나, 그 후로의 활동은 정체되고 작업은 중단되었다.

1993년의 IEC 시드니총회에서는, 일본이 확대 patent WG의 재활성화를 제안, 이것이 승인되어 WG가 재개하게 되었다.

1994년 5월에 열린 WG회의에서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9월의 ISO/IEC 뉴스 총회에서 논의 후, 약간의 수정을 거쳐 11월에 최종개정안이 ISO 및 IEC의 이사회에서 투표에 붙여졌다. 그 결과, 개정안이 찬성다수로 가결되었으며 그 최종 개정문은 다음과 같다.

ISO/IEC 업무지침 제 2부(국제규격 제정 방법) 중 특허권의 참조

5. 7 특허권(patent rights)의 참조(reference)

특별한 상황하에서, 기술적인 이유로 정당화된다면, 특허권, 실용신안 및 그외 발명을 기반으로 하는 법적권리, 이들과 관련된 공개출원(published applications)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국제규격서를 작성하는 것은 만일 그 규격의 조건이 다른 방법은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 때에는 부속서A의 규칙을 적용해야만 한다.

附屬書 A (규정) 특허권의 참조

A.1 국제규격의 작성중에 특허권의 존재가 확인되지 못한 경우 그 발행국제규격에는 다음과 같은 주기를 첨부한다.

”이 국제규격의 일부가 특허권의 대상일 가능

성이 있음에 주의하기 바람. ISO와(또는) IEC는, 어떠한 특허권의 확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음”

A.2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 특허권의 사용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국제규격을 작성하는 것이 정당화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a) 국제규격의 제안자는, 그 제안사항에 해당 된다고 생각되는 이미 알고 있는 특허권에 대해서, TC 또는 SC의 주의를 환기한다. 규격을 작성하는 사람은 규격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알게 된 특허권에 대해 TC 또는 SC의 주의를 환기한다.

b) 제안이 기술적으로 받아들여진 경우 제안자는 알게 된 특허권 소유자에 대해 그 권리의 세계적 라이센스에 대해 타당(reasonable)하면서도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조건을 갖고, 세계의 모든 신청자와의 교섭에 응할 것에 대한 성명서(Statement)를 요구한다. 이와 같은 교섭은 관계자에게 위임되어, 일단 ISO/IEC 외부에서 행해진다. 또한 연관된 국제규격의 서두(introduction)에서도 언급된다(e항 참조). 만약 특허권 소유자가 이와 같은 성명을 내지 않으면, 관련 TC 및 SC는, ISO이사회 또는 IEC이사회의 허가없이, 국제규격 중에서 그 특허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c) 모든 코멘트용 원안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넣는다.

“이 문서의 수취인은, 코멘트와 동시에 알고 있는 관련 특허권을 제시함과 함께 증거 문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d) 이사회가 승인을 하지 않는 한, 이미 알고 있는 특허권소유자 모두의 성명서를 제출받기 전까지는 국제규격은 발행되지 않는다.

e) 국제규격의 작성 중에 특허권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발행 국제규격의 서두에 다음과 같은 주의서를 첨부한다.

“ISO와(또는) IEC는 이 국제규격에 따르는 것이 (-항목-)에 나타나는 (-제명-)과 연관된 특허의 사용에 해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한다.

ISO와(또는) IEC는 이 특허권의 증거, 유효성 및 범주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

이들 특허권의 소유자는 ISO와(또는) IEC에 대해, 타당하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세계의 모든 신청자와의 교섭에 응할 의향이 있음을 보증하고 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이들 특허권 소유자들의 성명서가 ISO와(또는) IEC에 등록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특허권소유자의 성명 -]

[- 주소 -]

상기 이외의 특허권이 이 국제규격의 일부에 해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주의하기 바란다. ISO와(또는) IEC는 그와 같은 특허권의 어떠한 일에 대해서고 확인할 책임을 갖지 않는다.”

A.3 국제규격의 발행 후, 그 규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특허권의 라이센스가, 타당하면서도 비차별적인 조건하에서 허가되지 않음이 밝혀졌을 때에는, 그 국제규격은 재검토되기 위해 연관된 TC 또는 SC에 되돌려진다.

(3) 지적재산권정책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ISO/IEC 지적재산권정책에 있어 최근 개정의 주요점은 다음과 같다.

· ‘특허권’의 범위는 ‘특허, 실용신안, 기타의 발명(공개된 출원을 포함)과 명확화된 저작권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종래의 규정은 애매모호했었음)

· 발행국제규격에 ‘특허와의 저촉가능성 및 면책’에 관한 주의를 해놓은 개재규정이 추가되었다.(종래에는 발행규격의 기재규정 없음)

- 규격작성자 모두에 대해 터득하게 된 특허 정보의 연락에 대한 의무를 추가하였다. (종래에는 제안자만이 조사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규격화의 전제가 되는 특허권소유자의 사용허락 조건을 '타당하면서도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변경하였다. (종래는 '타당한 조건'만 있었음)

- 확인된 특허정보(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를 국제규격에 게재할 것을 규정으로 추가

이번 개정으로, 종래에 비해 모호성이 많이 줄어들어 보다 뚜렷해지긴 했지만, 실제 운용을 예측해보면 다른 기관과 같은 형태의 문제점이 적되고 있다. 즉,

- 연관된 필수 항목 특허조사의 어려움
- Patent Statement의 법적구속력이 불명확
- 비차별적이며 합리적인 조건의 기준이 불명확
- 표준으로 채택된 후에 발견된 특허의 취급법
- 표준에 다수의 특허가 관계되어 있는 경우의 라이센스료 문제 등이다.

2. ISO/IEC JTC1

(1) JTC1의 개요

컴퓨터와 정보처리기술은 ISO와 IEC의 관심 영역이었으므로 1960년에 ISO/TC97이, 1961년에 IEC/TC53이 "Computers and Information Processing"을 타이틀로 하는 TC로서 설립되었다. TC 설립 당시부터 표준화 과제분야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많았지만, 정보기술이 중요성을 띠게됨에 따라 표준화의 대상분야가 확대되었고, 그 결과 ISO와 IEC의 업무분장에 대한 조정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ISO와 IEC가 합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다. 결국, ISO와 IEC의 산하에 공동 TC를 만드는 것으로 합의되어 1987년에 JTC1이 발족하였다. JTC1은 두 국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양 기관의 운영규칙을 반영하는 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비용은 주로 각 SC의 간사를 책임지고 있는 멤버단체가 분담하고 있고, ANSI가 간사단체로 있다. 또한, ISO와 IEC의 공동관리에 의한 ITTF(Information Technology Task Force)가 제네바에 설치되어 중앙사무국의 입장으로 출판등의 처리와 전체적인 조정을 행하고 있다.

(2) JTC1의 지적재산권 정책

JTC1의 전문업무용지침의 특허관련 규정은 지침작성시 ISO/IEC의 구판을 잘못 채용하여 ISO/IEC와는 차이가 많은 상태였으나 1994년 2월 JTC1총회에서 개정됨으로써 ISO/IEC의 절차를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PAS(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운용된다.

※ PAS 제도하에서의 지적재산권 정책

정보기술분야에서는 공적인 표준화기관 이외의 조직(큰소시엄이나 업계단체등)에서 책정된 기술사항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사례, 즉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가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JTC1도 이러한 실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들 JTC1이 아닌 외부에서 책정된 기술사항에 대해서도 PAS(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s)로서 인정, 국제표준(IS 혹은 ISP)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절차에 대해 1994년 10월에 합의, 1997년 1월까지를 시행기간으로 하는 Management Guide²⁾를 통해 NB투표를 행하게 된다.

- PAS를 국제표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관해서 PAS 소유조직과 PAS 문서에 대한 두 가지의 기준을 설정한다.

- PAS 소유자(PAS Originator)는 PAS 기준으로서의 준거상황(협력의향, 조직의 성격, 지적

재산권관련)을 기록한 문서를 가지고 JTC1에 신청하면 NB(National Bodies)투표가 행해진다. 승인된 조직은 PAS 제안자로 등록된다. 이의 등록기간은 2년이며 갱신도 가능하다.

- PAS 제안자는 PAS에 PAS 문서기준에 따른 준거상황(완성도, 관계자와의 합의, ISO/IEC 스타일과의 적합성)을 기록한 설명 보고서를 첨부하여 JTC1에 송부하면, Fast Track 절차³⁾를 승인하였다. 그 절차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다.
- 투표에서 승인되면, 출판에 관한 ISO/IEC와 PAS소유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IS 또는 ISP로서 발행된다.

PAS와 연관된 특허권의 취급에 대해서는 PAS 소유조직과 관련된 기준에 대해 회답이 필요한 항목(Mandatory Elements)으로 조직과 조직에 속한 멤버들이 어떤 형태로 하여 ISO/IEC의 Patent Policy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특히, 검토대상인 PAS에 관해서는 적용가능하다면 조직과 멤버가 ISO/IEC의 Patent Policy를 따르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⁴⁾

III. 지역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정책

1. CEN/CENELEC

(1) CEN/CENELEC의 개요

CEN/CENELEC은 모두 벨기에 법에 기초하고 있는 비영리의 민간단체로 유럽표준(European Standard : EN)을 작성하는 표준화기관이다. CEN은 1961년에 설립되어 18개의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와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가맹국의 국내표준화 기관이 멤버로 되어있다. CENELEC은 1973년에 설립되어, CEN과 비슷한 18개국의 국내전기표준화기관이 멤버로 되어있다.

(2) CEN/CENELEC의 지적재산권 정책

CEN/CENELEC의 지적재산권 정책은 '표준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메모랜덤(Standardiz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1992/3)'에 나타나 있다.

여기에는, 기본방침으로서

- 표준화의 이념과 지적재산권보호의 이념은 상반되는 것이다.

즉 표준화는 아이디어를 공공재산화하는 것이고,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아이디어를 사유재산화하는 것이다

- 따라서, 표준에서의 지적재산권의 사용은(때로는 피할 수 없음) 예외이다.

CEN/CENELEC은 지적재산권 취급에 관한 실무에 있어 ISO/IEC의 Rule을 적용한다.

동이 서술되어 있다.

또한, 이 메모랜덤의 서두에는 표준화에서의 지적재산권의 문제 전반에 대해서 정보의 수집 관리 및 표준화 작업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제언을 하며 지적재산권의 전문가를 포함한 IPR Task Force의 설립이 제안되고 있다.

2. IEEE

IEEE는 1963년에 설립된 학회로 정보기술분야의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다. 약 274,000명의 멤버를 포함하며, 국제학회로서 활동하고 있고 그 표준화위원회에도 국적을 불문하고 참가 가능한 체제가 되어가고 있다.

IEEE의 지적재산권 정책은 ANSI의 지적재산권 정책과 거의 비슷하지만 그의 운용 매뉴얼에서, 표준안 속에 특허가 포함되는 경우의 표준작성시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 특허의 사용이 특정의 기업등에 부당하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지 말 것

- 해당 특허가 최량(最良)의 기술일 것
- 해당 특허에 업계의 누구나가 비차별적/합리적인 조건으로 접근 가능할 것
-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일 없이 표준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대체기술이 없을 것
- 특허기술의 제출시 특허권자에 강제해서는 안될 것

한편, TIA(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와 EIA(Electronic Industries Association)의 특허정책 역시 기본적으로는 ANSI의 그것과 거의 비슷하다.

3. ECMA

(1) ECMA의 개요

ECMA는 1961년에 스위스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정보기술과 전기통신에 관련된 분야의 표준화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동 분야에서 유럽내 이 분야의 개발, 제조, 판매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멤버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19개의 ECMA 표준을 작성하고 있다. 또한, JTC1의 A-Liaison 멤버이기도 하다.

(2) ECMA의 지적재산권 정책

ECMA의 특허정책은 “Code of conduct in patent matters(23/6/1994)”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멤버가 소유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다는 점, 멤버가 표준채택을 하게 될 때까지는 자사의 특허와 관련된 의향을 제출하지 않으면 비차별적, 합리적인 조건의 라이센스를 허락한다고 간주하여 투표를 진행시키는 등이 특징이다.

지적재산권 정책의 요점은 아래와 같다.

가. 정책

· 표준과 관련된 특허가 합리적이면서도 비차별적인 조건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지 않으면, ECMA총회에서 표준권고의 승인을 행하지 않는다.

· 표준과 관련된 특허가 ECMA 멤버의 소유인 경우 멤버는 해당 특허와 관련된 자사의 라이센스 정책을 서술할 것이 요청된다. 또한, 멤버이외의 특허에 대해서는 라이센스 허락에 대한 성명을 제출할 것이 요구되어진다.

· 표준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ECMA 멤버에 의한 경우는 관련된 위원회에 계속적인 참가나 총회에서의 찬성 투표가 후에 특허권을 취득했을 시의 라이센스에 대한 허락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제 3자의 경우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판명하는 단계에서 성명을 요청하지만, 최악의 경우 표준을 철회한다.

나. 절차

관련되는 특허조사의 절차로서, 총회 2개월전에 표준안이 전 멤버에게 발송되며, 멤버는 표준안과 관련된 권리를 주장하던가 아니면 포기하던가, 혹은 제 3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청된다.

보고하지 않았던 멤버에 대해서는 관련특허에 대한 비차별적이면서 합리적인 조건의 라이센스를 시행하고 있다는 가정을 하여, 투표를 진행해도 좋다.

4. JISC

(1) JISC의 개요

JISC는 1949년의 공업표준화법의 제정과 함께 공업기술원에 설치되어, 공업표준안의 심의 및 그 결과를 주무대신에게 답신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결과, 공업표준으로 제정된 것이 일본공

업규격(JIS)이다. 현재, 약 8200개의 JIS가 존재하며, 공업기술원표준부가 JISC의 사무국의 기능을 하고 있다. 표준의 원안은, JISC가 기술 분야별로 전문단체(학회, 협회, 공업단체등)에 위탁하는 경우와, 업계가 자주적으로 원안을 작성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또한, JISC는 ISO 및 IEC의 일본멤버이기도 하다.

(2) JISC의 지적재산권 정책

현재 JISC에는 표준관련 지적재산권의 취급 절차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다만,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규정으로서는 JIS Z 8301-1990 '규격표의 양식'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4.3 적용범위」의 (5)에,

"규격의 규정대상에, 특허/실용신안등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로서, 등록번호, 채용한 부분 및 공고년월일을 명기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기재한다. '이 규격에 기재해놓은 것은, 공업소유권의 소유기한이 지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참고 1. 해설의 정리법'의 '5. 적용범위' (1)에서는,

"규격에 규정된 제품/방법등에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이 있는 경우, 그것이 적용범위의 '참고'에 기재되지만, 가능하면 소유권자에게 사용허락에 대한 신청을 받도록 할 준비를 할 것을 이해시켜서, 그러한 사항을 서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어떠한 경우라도, 규격으로 결정되어도 무상공개를 의미하지 않음을 주의해둘 필요가 있다."

현재, JISC의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통용되고 있다.

- 가능한한 표준안에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 불가피하게 표준안에 지적재산권이 포함되

는 경우에는, 권리자에 대해 '타당하면서도 비차별적인 조건하에서의 실시허락을 행함'이라는 내용의 성명서 제출을 요청한다.

-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JIS의 제정을 하지 않는다.

5. TSACC

(1) TSACC의 개요

TSACC은 전기통신 및 정보기술분야와 관련된 산업체, 사용자 및 정부단체를 중심으로 1991년 5월에 구성된 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표준개발기구가 아니라 캐나다의 주요 표준화기구들이 회원으로 참석하여 전기통신 및 정보기술 표준정책과 전략개발, 이행에 있어서 자문을 제공하는 포럼형태의 조직이다. 이러한 정책과 전략에는 인증, 적합성 확인, 상호인정과 같은 이슈도 포함된다. 한편, TSACC는 다른 국가, 지역, 국제표준기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의견교환, 절차개선을 위한 기본틀을 제공한다.

(2) TSACC의 지적재산권 정책

캐나다의 TSACC는 그동안 지적재산권 정책이 없었으나, 1995년 제 2회 GSC회의를 통하여 'TSACC 특허정책'을 발표하였다.

TSACC는 특허정책의 수립시 주요 표준화기구들의 정책들을 많이 참조하였으며, 이들간에 서로 공통이 되는 사항들을 수용하고, 이들과 조화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했다고 한다. TSACC은 표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적재산권이 관련된다고 해서 부당히 표준화가 제한되는 것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그 기본입장을 밝히고 있다. TSACC의 특허정책은 매우 간단·명료하지만, 특허권자가 제출하는 확인서의 내용이라든지, 표준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특허분쟁에 대한 책임문제 등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TSACC의 지적재산권 정책은 다음과 같다.

TSACC의 특허정책

1.0 목적

정보통신이나 정보기술 표준을 준비하는 목적은 가능한한 광대역에 걸친 서비스와 장비들의 상호운용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정보통신과 정보기술의 표준은 반드시 어찌 한 그리고 모든 산업체 참가자들에게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지적재산권이 내포된 표준에 대한 부당한 제한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캐나다 정보통신 및 정보기술 표준개발기구(SDO)는 캐나다 표준화위원회(SCC)에 의해 승인되었다. 이 정책은 표준내에 특허가 관련되는 경우를 위하여 캐나다 표준화위원회와 캐나다 정보통신 및 정보기술 표준기구가 채택한 절차를 권고한다.

2.0 관련 특허의 조사

등록된 혹은 출원중인 지적재산권이 캐나다 정보통신이나 정보기술 표준과 그것이 준비중인 완성후이건- 부분적으로건,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누구든지 이를 인지한 자는 표준개발기구에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3.0 특허관련 신고서

특허조사는 가능한한 빨리 확인되어야 하는데, 즉, 표준안이 등록된 혹은 출원중인 특허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할 수 있음을 가능한 빨리 식별하여야 한다. 이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표준개발기구는 그것이 활용될 수 있을 때마다, 심지어는 관련표준의 출판 이후라도, 특허정보에 대해 취해야 할 행동을 준비하여야 한다.

4.0 특허권자 선택

특허권자는 세 가지의 선택권을 가진다.

4.1 특허권자는 표준개발기구에 표준을 구현할 목적으로 비차별적 기초하에 보상없이 특허기술의 면허허여를 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한다.

4.2 특허권자는 표준개발기구에 표준을 구현할 목적으로 비차별적 기초하에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기술의 면허허여를 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한다.

4.3 4.1이나 4.2의 조건으로 면허를 허여하지 않는다.

5.0 공지

표준개발기구는 4.1과 4.2 조건의 신고서를 받아야 하며, 관련표준이 승인되는 경우 특허권자의 기술허여 협약사실을 특허와 관련된 표준의 출판에 있어 명백히 공지하는 의무를 가진다.

6.0 기록

표준개발기구는 그들이 제출받는 특허신고서의 기록들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 그 기록은 특허명, 번호, 소유권자 그리고 출원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가로, 그 기록은 특허에 포함되는 관련표준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기록들은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7.0 면허허여 거절

특허권자는 4.1 또는 4.2의 조건으로 특허를 허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표준개발기구는 준비중인 표준을 철회 또는 수정하거나 이미 승인된 표준을 취소할 권리를 가진다. 취해지는 모든 조치는 표준개발기구의 재량을 통해 결정된다.

8.0 책임의 부인

캐나다의 표준개발기구가 특허권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송에 책임이 없음을 정확히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표준개발기구 입장에서 특허의 유효성에 관한 어떠한 견해도 표명하지 않는다. 특허허여에 대한 협상은 특허사용자와 특허권자간의 문제이다; 표준개발기구는 어떠한 종류의 중재도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표준개발기구는 특허신고서를 받지 않고 표준을 출판함으로써, 특허포함의 가능성의 여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표준개발기구는 그들 표준의 주요 문제에 관한 특허조사를 행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ISO/IEC, ISO/IEC JTC 1, IEEE, CEN/CENELEC, ECMA, JISC의 지적재산권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이미 수차례에 걸쳐 TTA Journal에 게재된 기구(IITU, ETSI, ANSI, T1, TTC, RCR)까지를 포함하면 이제 세계 혹은 지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표준화기구들 대부분의 지적재산권정책은 분석해본 것이다.

현재까지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연구는 표준화기구를 중심으로 경험론적 연구방법들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들 정책의 공통적인 한계는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필수지적재산권(또는 지적재산권) 조사의 곤란함 : 지적재산권조사 요청의 구속력 한계, 조사·신고의 한계, 출원 중인 특허의 조사 불가능성, 필수성의 판단 문제
- 지역(국가) 표준에서의 지역외 지적재산권 등의 처리문제
- 표준제정 후에 발견된 지적재산권의 문제
- 특허 이외, 특히 저작권의 처리 문제
- 지적재산권 관련 성명서의 법적 효력의 불명확성 : 표준의 인용이 실시된 경우, 지적재산권의 권리이전이 생긴 경우, 성명서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
- 면허·허여의 조건 :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의 견해 차이, 합리적 조건의 축적적 효과 문제, 지적재산권 관련련 성명서에 대한 분쟁 해결 등이다. 이러한 정책상의 한계는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해 나아가야 할 문제이다.

한편, 최근에는 학계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며, 기존 연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관심자들이 늘어나면서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문제가 기존의 단편적인 분석·비판보다는 표준과 지적재산권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제도들과의 관계에서의 폭넓은 연구로 발전되고 있다. 즉, 표준과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지적재산권법, 독점금지법, 국제통상적 측면,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혹은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여(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근래에 정보통신표준화에 있어 지적재산권의 보호문제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외부 경제성이 높은 제품들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병행하여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현추세에 따라 기술개발경쟁 및 제품개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짐으로써 독점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려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연구개발비의 회수나 상호허여와 같은 지적재산권 전략을 나름대로 수립하고 있고, 표준화 관계자의 입장에서는 표준화가 기술적인 우위를 선점하고 첨단 기술의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인식됨에 따라 표준화 대상의 다양화와 시급성을 상당히 고려함으로써 양 제도가 조화되기 힘든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통신분야의 주체가 정부등 공공기관이었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지적재산권을 대부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였던 과거와는 달리, 통신사업주체의 UR, WTO 등의 영향으로 민영화되고, 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통신분야의 주체가 하나의 민간사업자에 불과하게 된 반면에 상대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상황들로 미루어보아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당분간 계속적인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우리의 유효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면서 표준화의 잇점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한 적절한 정책운용이 요구된다하겠다.

이제, 급변하는 환경에서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제도 각각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양 제도를 병립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의 방향을 전환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를 계속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1. 이선화, 정석호, “주요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I)”, TTA Journal 제 33호, TTA, 1994.6. pp. 66-76.
2. 이선화, 이건찬, “주요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II)”, TTA Journal 제 34호, TTA, 1994.8. pp. 94-108.
3. 김승진, “주요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III)”, TTA Journal 제 35호, TTA, 1994.10. pp. 113-121.
4. 이선화, 한광수, “주요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IV)”, TTA Journal 제 36호, TTA, 1994.12. pp. 94-108.
5. 이선화, “주요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V)”, TTA Journal 제 37호, TTA, 1995.2. pp. 102-112.
6. 한국통신기술협회 지적재산권연구위원회, “주요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 자료집”, TTA, 1994.8.
7. 財團法人 知的財產研究會, 技術基準を巡る知的財産権問題に關する調査研究, 1995.3. pp.1-88.

8. Mark Shurmer and Gary Lea, “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 Fundamental Dilemma”,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Society 10th Annual Conference, Sydney, Australia 3-6, July 1994.
9. Gerard Robin, “The European Perspective for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EEE Communications Magazine, Vol.32 No.1. 1994.1. pp. 40-44.
10. GSC Meeting Document(95)-38, TSACC Report o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 TSACC, 1995.

(약 어)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CEC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y
CEN	Comite European de Normalisation
CENELEC	Comite European de Normalisation ELECrtechnique
ECMA	European Computer Manufacturers Association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IA	Electronic Industries Association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지상중계

주요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ade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TC	Technical Committee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IA	Telecommunication Industry Association
JISC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Committee	TSACC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Advisory Councils of Canada
JTC1	Joint Technical Committee-1	TTA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RCR	Research & Development Center for Radio System	TTC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Committee
SC	Sub Committee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SG	Study Group		
TBT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 1) 표준화와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주요 논쟁 즉 양자의 문제발생원인, 상황, 해결방안 및 본 고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ITU, ETSI, TTC, RCR, ANSI 등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해서는 TTA Journal 제 33호(1994.6.)에서 제 37호(1995.2.)까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 2) "The Transposition of 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s into International Standards - A Management Guide -" ISO/IEC JTC1 N 3279 revised(1994/10/28)
- 3) 국가표준등으로서 일정한 실적이 있는 표준에 대해, 작업원안(WD)로부터의 심의를 생략하여, 국제표준안(DIS)로서의 투표 단계로부터의 심의를 행하는 것으로, 폐속으로 표준화를 진행시키는 제도(1984년에 ISO에서 개시).
- 4) PAS의 기준은 통상의 기준과는 달라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 PAS소유자가 회답을 하는(NO 라고 답해도 됨)것으로, 판단은 각 NB가 투표시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물론, 특허에 대해서는, ISO/IEC의 Rule에 따를 것을 기대한다.
- 5) A-Liaison 멤버는, Fast Track 절차에 의해 JTC1의 표준안을 제출할 수 있다.